

# 自動車保險 共同物件 事業方法書

「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위험배분에 관한 상호협정」에 의한 기초서류

## 1. 보험종목의 명칭

- 개인용자동차보험
- 업무용자동차보험
- 영업용자동차보험
- 이륜자동차보험

## 2. 보험종목별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

개인용자동차보험, 업무용자동차보험, 영업용자동차보험, 이륜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

- 가. 개인용자동차보험 :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. 단,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,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제외
- 나. 업무용자동차보험 : 위 “가. 개인용자동차보험”의 가입대상이 아닌 모든 비사업용자동차. 단, 이륜자동차는 제외
- 다. 영업용자동차보험 : 모든 사업용(영업용) 자동차
- 라. 이륜자동차보험 :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대상인 이륜자동차

## 3. 보험목적에 관한 사항

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피보험이익 및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관한 피보험이익을 보험목적으로 한다.

## 4. 보험기간

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첫날 2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 24시에 끝난다. 그러나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.

## 5.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

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주고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의 확인을 받는다.

## 6.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

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 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.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영수할 수 있다.

## 7.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

범용 판매채널을 이용하여 판매한다.

## 8.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
「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위험배분에 관한 상호협정」에서 정한 요율서에 따른다.

## 9. 특약에 관한 사항

보통약관에 첨부할 특약은 다음과 같다. 단, 긴급출동서비스특별약관 및 범률비용지원특별약관의 경우 각 사의 기준을 따른다.

### 가. 개인용자동차보험

- 만21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
- 만24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
- 만26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
- 만30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
- 만35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
- 만43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
- 만48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
-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한정 특별약관
- 가족 운전자한정 특별약관
-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운전자한정 특별약관
- 부부 운전자한정 특별약관
- 기명피보험자 1인 운전자한정 특별약관

- 가족 및 지정1인 운전자한정 특별약관
- 부부 및 지정1인 운전자한정 특별약관
- 유상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
-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
- 주행거리연동 특별약관
-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
-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
-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
-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
-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
-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
- 보험대차 운전중 사고보상 특별약관
-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
-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
- \*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

#### 나. 업무용자동차보험

- 만21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
- 만24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
- 만26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
- 만30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
- 만35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
- 만43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
- 만48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
- 가족 운전자한정 특별약관
- 부부 운전자한정 특별약관
- 기명피보험자 1인 운전자한정 특별약관
- 임직원 운전자한정 특별약관
-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
  - 도로주행 시험용 자동차에 관한 추가 특별약관
- 유상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
- 전차량일괄계약 자동담보 특별약관
-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
-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
-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
-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
-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
- 농경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
-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
-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

- 주차위반 피건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
-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
-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
-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
- \*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
- \*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

다. 영업용자동차보험

- 만21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
- 만26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
- 만30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
- 만35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
- 기명피보험자 1인 운전자한정 특별약관
- 임직원 운전자한정 특별약관
-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
-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
-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
-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
-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
- 주차위반 피건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
-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
-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
-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
- \*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

라. 이륜자동차보험

- 만21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
- 만24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
- 만26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
- 만30세이상 연령한정 특별약관
-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
- 전차량일괄계약 자동담보 특별약관
-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
-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
-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
-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
-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
- \*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

## 10. 적용요율 기재에 관한사항

보험 청약서에는 담보종목별 적용보험료, 보험가입경력요율,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, 특별요율, 우량할인·불량할증요율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.

## 11. 자동차보험 우량할인·불량할증 적용상 유의사항

가. 보험료의 추징 또는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

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적용등급(률)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료를 추징하거나 환급함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.

나. 계약체결 금지

(1) 개별할인할증

기존계약을 효력상실, 해지, 중복시키고 동 계약보다 적용등급이 낮은 다른 계약과 동일증권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다.

(2) 단체할인할증

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다.

(가)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서로 다른 보험료 적용기간에 걸치는 단기계약

(나) 동일보험료 적용기간 말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단기계약

(다) 기존계약을 효력상실, 해지, 중복시키고 동 계약보다 낮은 적용률로 체결하는 계약

## 12. 준용 규정

이 사업방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별 사업방법서를 준용한다.